

## 「우당대상」 규정

제정 2009. 04. 24 개정 2014. 03. 3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경동대학교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와 경동대학교 및 동우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신 우당 전재욱박사님의 설립이념을 받들어 학문의 발전 및 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「우당대상」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대상) 이 규정에 의한 수상 대상은 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·경영 하는 대학의 교직원,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수상대상자 선발기준)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.

1. 법인 및 대학 설립이념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
2. 학문의 발전 및 학생지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3. 창의적인 학사행정 수행으로 능률 향상과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
4.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·근면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
5. 재학 중 또는 졸업 후,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
제4조(수여 시기 및 인원) 「우당대상」의 수여시기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시 기 : 개교기념일  
졸업식
2. 인 원 : 교직원 1명(법인직원 포함)  
재학생 또는 졸업생 1명

제5조(수여방법 및 부상) ① 「우당대상」은 법인이사장이 수여한다.

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며,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상의 수여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.

제6조(수상대상자 추천) ① 수상대상자는 대학의 총장이 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법인사무국에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31>

② 제1항의 수상대상자는 단수로 추천하되, 교직원의 경우는 당해 대학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 이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제1호서식>

<교직원용 상패>

# 우 당 대 상

소 속  
직급 또는 직위  
성 명

(상 패 문)

년 월 일

학교법인경동대학교 이사장 교육학박사 고희재

<별지 제2호서식>

<학생용 상장>

# 우 당 대 상

소 속  
학 번  
성 명

(상 장 문)

년 월 일

학교법인경동대학교 이사장 교육학박사 고희재

< 별지 제3호서식 >

공 적 조 서			
성 명	(한자)		
주민등록번호			
본 적 (국적)			
주 소			
직 업	소 속		
직 위	등급(직명·직급)	근무기간	
공적요지( 90자 내외 )			
추천 훈격		추천 순위	
조 사 자			
소 속		직 위	
직 급		성 명	(인)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20px;"> <span>년</span> <span>월</span> <span>일</span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20px;"> <span>성 명</span> <span>관인</span> </div>			

주요 학력 및 경력			
년월일	학 (경) 력	년월일	학 (경) 력
~		~	
~		~	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		
년월일	내 용	년월일	내 용
공 적 사 항			